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2
가. 개 요	2
나. 사업별 내역	7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기준)	9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10

II .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2
가. 일반회계	12
【공 통】	
1. 과태료·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편성 필요	12
2. 세출예산안	17
가. 일반회계	17
【공 통】	

1.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	17
【세부사업별】	
2. 위탁선거관리(1131-306)	22
가. 개 요	22
나.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안정적 관리 필요 ..	24
다.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31
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에 관한 「신용협동 조합법」 개정을 반영한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37
3.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43
가. 개 요	43
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노후화된 선거장비·물품 신규제작 필요 ·	44
4. 정당사무지원(1132-320)	52
가. 개 요	52
나.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필요	53
5.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58
가. 개 요	58
나. 유권자 의식 조사 예산 편성의 전액 삭감 필요	59
다.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65
6. 위법행위예방활동(1131-333)	70
가. 개 요	70
나. 지방의원 후원회 증가에 대비한 담당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71

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76
7.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80
가. 개 요	80
나.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81
8.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3)	90
가. 개 요	90
나. 선거기록관 건립과 연계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91
9. 국제교류협력(7132-345)	95
가. 개 요	95
나. A-WEB을 통한 민주주의 ODA 확대 검토 필요	96
10. 위원회운영(7132-351)	107
가. 개 요	107
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108
11. 청사관리(7132-354)	114
가. 개 요	114
나.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	115
[별첨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124

문 의 처
02-6788-5332
02-6788-5343

I.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100억 1,700만원 대비 △87.0%, 87억 1,800만원이 감소한 1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임기만료선거 종료에 따라 기탁금 국고 귀속액 감소 등으로 87억 1,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0,017	1,299	△8,718	△87.0
51 관유물대여료	28	31	3	10.7
토지대여료(51-511)	23	26	3	13.0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5	5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	10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0	10	-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400	100	△300	△75.0
과태료(56-563)	400	100	△300	△75.0
57 변상금 및 위약금	3	3	-	-
변상금(57-571)	3	3	-	-
58 가산금	1	1	-	-
가산금(58-581)	1	1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565	1,125	△8,440	△88.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9,565	1,125	△8,440	△88.2
69 잡수입	10	29	19	190.0
기타잡수입(69-691)	10	29	19	190.0

2. 세출예산안

가. 개 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¹⁾은 2024년도 8,572억 원 대비 4,937억 1,500만원 (△57.6%) 감소한 3,63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금 액	857,227	363,512	△493,715	△5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은 국회의원선거 종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경비,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재외선거관리, 선거장비및물품관리 비용이 순감 및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620,272	122,783	△497,489	△80.2
국회의원선거관리	280,992	0	△280,992	순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0	45	45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163	149	△14	△8.6
재외선거관리	9,891	46	△9,845	△99.5
위탁선거관리	258	136	△122	△47.3
선거보전금	107,224	0	△107,224	순감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5,643	2,545	△33,098	△92.9
정당사무지원	80	66	△14	△17.5
정당보조금	110,074	52,383	△57,691	△52.4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266	477	△789	△62.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369	1,240	△129	△9.4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45.3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7,439	△3,508	△32.0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84	408	△376	△48.0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2	93	△9	△8.8
선거방송토론	358	281	△77	△21.5
선거여론조사심의	293	238	△55	△18.8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42	336	△106	△24.0
선거관리역량강화	644	0	△644	순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412	340	△72	△17.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442	1,313	△129	△8.9
국제교류협력	1,130	926	△204	△18.1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64	137	△27	△16.5
차량및물품관리	987	605	△382	△38.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9,500	18,491	△1,009	△5.2
위원회운영	1,761	703	△1,058	△60.1
선거연수원운영	2,001	1,909	△92	△4.6
청사관리	23,959	25,005	1,046	4.4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63	-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273	6,119	△154	△2.5
예비금	196	50	△146	△74.5

※ 참고: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제외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부사업별 증액사업은 2026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4,5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고려하여 인건비 39억 9,800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청사관리 10억 4,600만원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45	45	순증
인건비	221,572	225,570	3,998	1.8
청사관리	23,959	25,005	1,046	4.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종료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관리 경비 2,809억 9,200만원, 재외선거관리 98억 4,500만원, 선거보전금 1,072억 2,400만원, 정당보조금 576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선거장비 제작 완료로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30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또한 재보궐선거관리 경비 14백만원, 위탁선거관리 경비 1억 2,200만원, 민주시민교육 축소에 따른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경비 7억 8,900만원, 교육및연구기반조성 경비 1억 2,900만원, 홍보사업 축소에 따른 공명선거기반조성 경비 6억 1,400만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기간 축소에 따른 위법행위예방활동 경비 35억 8백만원,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경비 3억 7,600만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경비 9백만원, 선거방송토론 경비 7,700만원. 선거여론조사심의 경비 5,500만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경비 1억 600만원, 선거관리 역량강화 사업 폐지에 따른 6억 4,400만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경비 7,200만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억 2,900만원, 국제교류협력 경비 2억 400만원,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경비 2,700만원, 차량 및물품관리 경비 3억 8,200만원, 전산운영경비 10억 900만원, 위원회운영 경비 10억 5,800만원, 선거연수원운영 경비 9,200만원,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경비 1억 5,400만원, 예비금 1억 4,600만원 이 감액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국회의원선거관리	280,992	0	△280,992	순감
재보궐선거관리	163	149	△14	△8.6
재외선거관리	9,891	46	△9,845	△99.5
위탁선거관리	258	136	△122	△47.3
선거보전금	107,224	0	△107,224	순감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5,643	2,545	△33,098	△92.9
정당사무지원	80	66	△14	△17.5
정당보조금	110,074	52,383	△57,691	△52.4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266	477	△789	△62.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369	1,240	△129	△9.4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45.3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7,439	△3,508	△32.0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84	408	△376	△48.0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2	93	△9	△8.8
선거방송토론	358	281	△77	△21.5
선거여론조사심의	293	238	△55	△18.8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42	336	△106	△24.0
선거관리역량강화	644	0	△644	순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412	340	△72	△17.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442	1,313	△129	△8.9
국제교류협력	1,130	926	△204	△18.1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64	137	△27	△16.5
차량및물품관리	987	605	△382	△38.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9,500	18,491	△1,009	△5.2
위원회운영	1,761	703	△1,058	△60.1
선거연수원운영	2,001	1,909	△92	△4.6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63	-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273	6,119	△154	△2.5
예비금	196	50	△146	△74.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 밖에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은 전년 동액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동액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563	563	-	-
온라인투표기반조성 (정보화)	563	563	-	-

나. 사업별 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선거의공정한관리」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은 공직선거관리, 정당발전지원, 시민 교육및공명선거정착, 선거관리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운영 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예비금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일반·지방행정	857,227	363,512	△493,715	△57.6	
				입법및선거관리	857,227	363,512	△493,715	△57.6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66,286	△494,512	△88.2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공직선거관리	434,171	2,921	△431,250	△99.3	
				대통령선거관리	0	0	0	0	
				국회의원선거관리	280,992	0	△280,992	순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0	45	45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163	149	△14	△8.6	
				재외선거관리	9,891	46	△9,845	△99.5	
				위탁선거관리	258	136	△122	△47.3	
				선거보전금	107,224	0	△107,224	△100.0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5,643	2,545	△33,098	△92.9	
				정당발전지원	110,154	52,449	△57,705	△52.4	
				정당사무지원	80	66	△14	△17.5	
				정당보조금	110,074	52,383	△57,691	△52.4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책	15,720	10,304	△5,416	△34.5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266	477	△789	△62.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369	1,240	△129	△9.4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45.3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7,439	△3,508	△32.0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784	408	△376	△48.0	
				선거관리지원	753	612	△141	△18.7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2	93	△9	△8.8	
				선거방송토론	358	281	△77	△21.5	
				선거여론조사심의	293	238	△55	△18.8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297,226	797	0.3	
				인건비	221,572	225,570	3,998	1.8	
				기본경비	15,383	15,159	△224	△1.5	
				기관운영지원	52,442	49,765	△2,677	△5.1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42	336	△106	△24.0	
				선거관리역량강화	644	-	△644	△100.0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412	340	△72	△17.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442	1,313	△129	△8.9	
				국제교류협력	1,130	926	△204	△18.1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64	137	△27	△16.5	
				차량및물품관리	987	605	△382	△38.7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9,500	18,491	△1,009	△5.2	
				위원회운영	1,761	703	△1,058	△60.1	
				선거연수원운영	2,001	1,909	△92	△4.6	
				청사관리	23,959	25,005	1,046	4.4	
				선거행정정보화	6,836	6,682	△154	△2.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63	-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273	6,119	△154	△2.5	
				예비금	196	50	△146	△74.5	
				예비금	196	50	△146	△74.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 (일반회계 기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35억원은 정부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 677조 4,000억원의 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4년도 0.13%에 비하여 점유비가 0.08%포인트 감소함.

<연도별 선관위예산안의 정부예산안 점유율 현황('21년도~'25년도)>

(단위: 억원, %)

구분	정부 예산안(A)	선관위 예산안(B)	점유율(B/A)
2021년도	5,558,000	3,843	0.07
2022년도	6,044,000	8,715	0.14
2023년도	6,387,000	4,073	0.06
2024년도	6,569,000	8,324	0.13
2025년도	6,774,000	3,635	0.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정부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3.1%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감소율은 △57.6%임.

<2025년도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대비 선관위 예산증가율>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정 부	6,569,000	6,774,000	205,000	3.1
중앙선관위	8,572	3,635	△4,937	△57.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 유무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정당보조금 등 법정경비가 예산의 대부분(2025년도의 경우 76.5%)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음.

<2025년도 법정경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선거관 리	국 회 의원선 거관리	전 국 동시지 방선거 관	재보궐 선거관 리	재 외 선거관 리	위 탁 선거관 리	선 거 보전금	정 당 보조금	인건비	소 계
363,512	-	-	45	149	46	136	-	52,383	225,570	278,32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세출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21년~'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385,228 (△47.2)	872,594 (126.5)	406,700 (△53.4)	857,227 (110.8)	363,512 (△57.6)
전국단위 선거	-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가. 일반회계

【공 통】

- 2024년 9월말 기준 약 13억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이 존재하는 만큼 상당액수가 2025년 수입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과 그 징수가능성을 감안한 세입예산 증액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봄.

1. 과태료·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증액편성 필요

-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귀속액, 당선무효된 자의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으로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내역	예산액
과태료 (12-56-563)	- 직전 임기만료 선거(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 부과액 기준 편성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225백만원 -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된 자 등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800백만원 -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100백만원	1,12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나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전액 수입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34조3)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징수결정으로 이월해야 함. 이러한 과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 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정을 거쳐야 미반환된 금액이 국가회계에 반영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9월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 현황을 보면 2024년에도 상당량의 미수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들은 모두 2025년 수입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될 것임.

<2024년도 과태료·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 현황>

(2024. 9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액	전체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월액)	전체 수납액 (미수납액 중 수납)	미수납액
과태료 (12-56-563)	400	239	186	53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9,565	6,155	4,906	1,24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년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편성내역에는 이처럼 2024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이월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물론, 현재 기준 미수납액 역시 징수 재위탁,⁴⁾ 소멸시효 연장,⁵⁾ 국세청과의 공조⁶⁾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일부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할 세무서로부터 무재산 등으로 인한 징수불가 통보된 과태료는 연 1회 정기 재위탁하고, 압류가능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수시 재위탁

5)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과태료 등은 관할 위원회가 재판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연장

6) 국세청에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세입징수와 관련된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속적 관심을 당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말 기준 약 13억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이 존재하는 만큼 상당 액수가 2025년 수입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과 그 징수가능성을 감안한 세입예산 증액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징수재위탁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적 대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관련 2024년 국정감사 회의록>

○김종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반환된 액이 78명에 191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어떤, 전액 환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략) 더 큰 문제가 지금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도 않고 또 후보에 출마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요? (생략)

○정동만 위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이 약 190억 정도 국민 혈세가 미반환된 상태입니다. 한 명 미납액이 몇십 억원인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국민 혈세 반환도 안한 상태에서 출마도 할 수 있지요? (중략) 더욱 철저한 환수 또 최종 미납자 공개 등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생략)

※ 자료: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0.) 초고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국가선거보전비용 반환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선무효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국가선거보전비용 반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24.10.25. 현재)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김종양의원	2204165	24.09.23.	-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 -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

2.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공 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경비를 제외하고도 크게 감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스템, 청사, 선거장비 및 물품 등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증액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공직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해임을 감안해도 정부 재정 긴축 기조하에 주요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데 있음.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937억원 감소한 3,63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선거경비⁷⁾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도 전년대비 11.4%(87억원) 감액된 678억원으로 2년 연속 감액되어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7)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선거보전금, 선거장비, 정당보조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A)	'25년안(B)	증 감 (B-A)	%
< 합 계 >	3,852	8,706	4,067	8,572	3,635	△4,937	△57.6
· 사업비	1,527	6,384	1,738	6,203	1,228	△4,975	△80.2
· 사업비 (선거경비제외)	737	766	785	764	678	△87	△11.4
· 인건비	2,173	2,167	2,166	2,216	2,256	40	1.8
· 기본경비	152	158	163	154	152	△2	△1.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비와 각급 위원회의 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여성·다문화·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연수 폐지, 유권자의 날 행사 및 유튜브 운영 축소, 차량교체비 전액 삭감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음.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4 예산 (A)	'25 예산 (B)	증감 (B-A)	주요 감액 내역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7,439	△3,508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기간 축소
위원회운영	1,761	703	△1,058	· 각급 위원회의 운영비 감액
민주시민의식및함양지원	1,266	477	△789	· 여성 다문화 정당관계자 등 연수 폐지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 유권자의날 행사 및 유튜브 운영 축소
차량및물품관리	987	605	△382	· 차량교체비 전액 삭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통해 2023년·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관행적·점증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효과성 재점검을 추진하는 등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정비를 통해 총 24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주요 유형>

투자 우선순위 조정	- 산업구조·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낮은 사업 재구조화 - 일반·범용목적 용자지원을 맞춤형 용자지원으로 전환
공공경비 절감	- 각 부처 내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합 발주 - 관례적 시설비 지급을 사전점검 통해 필수소요에 한정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조세·재정지출 간 중복지원 정비 - 현장의 실소요를 재점검하여 집행방식·사업규모 조정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예산안 홍보자료(2024.8.27.), p.34.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경비를 제외하고도 크게 감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스템, 청사, 선거장비 및 물품 등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증액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 고

2025년 사업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젝트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4예산 (A)	'25예산안		증감액 (B-A)	% /
						요구안	조정안(B)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	857,227	452,133	363,512	△493,715	△57.6
				입법및선거관리	857,227	452,133	363,512	△493,715	△57.6
				선거의공정한관리	560,798	94,576	66,286	△494,512	△88.2
				공직선거관리	434,171	11,480	2,921	△431,250	△99.3
				대통령선거관리	-	-	-	-	-
				국회의원선거관리	280,992	-	-	△280,992	순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92	45	45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163	246	149	△14	△8.6
				재외선거관리	9,891	621	46	△9,845	△99.5
				위탁선거관리	258	892	136	△122	△47.3
				선거보전금	107,224	-	-	△107,224	순감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5,643	9,629	2,545	△33,098	△92.9
				정당발전지원	110,154	53,518	52,449	△57,705	△52.4
				정당사무지원	80	1,135	66	△14	△17.5
				정당보조금	110,074	52,383	52,383	△57,691	△52.4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책	15,720	27,417	10,304	△5,416	△34.5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266	1,768	477	△789	△62.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369	1,869	1,240	△129	△9.4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1,863	740	△614	△45.3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21,250	7,439	△3,508	△32.0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KODA)	784	667	408	△376	△48.0
				선거관리지원	753	2,161	612	△141	△18.7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2	259	93	△9	△8.8
				선거방송토론	358	573	281	△77	△21.5
				선거여론조사심의	293	1,329	238	△55	△18.8

분야	부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4예산 (A)	'25예산안		증감액 (B-A)	%
						요구안	조정안(B)		
				선거관리행정지원	296,429	357,557	297,226	797	0.3
				인건비	221,572	237,082	225,570	3,998	1.8
				기본경비	15,383	15,844	15,159	△224	△1.5
				기관운영지원	52,442	92,025	49,765	△2,677	△5.1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42	1,240	336	△106	△24.0
				선거관리역량강화	644	573	-	△644	순감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412	1,843	340	△72	△17.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442	11,841	1,313	△129	△8.9
				국제교류협력	1,130	1,375	926	△204	△18.1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64	697	137	△27	△16.5
				차량및물품관리	987	1,628	605	△382	△38.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9,500	35,734	18,491	△1,009	△5.2
				위원회운영	1,761	2,290	703	△1,058	△60.1
				선거연수원운영	2,001	2,509	1,909	△92	△4.6
				청사관리	23,959	32,295	25,005	1,046	4.4
				선거행정정보화	6,836	12,410	6,682	△154	△2.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3,458	563	-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273	8,952	6,119	△154	△2.5
				예비금	196	196	50	△146	△74.5
				예비금	196	196	50	△146	△74.5

【세부사업별】

2. 위탁선거관리(1131-306)

-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의 지도·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상황실 운영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선거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관련 개정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회의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2억 5,8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 감액(△47.3%)된 것임.
- 다만, 동 사업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예산 및 결산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2025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위탁선거관리	258	136	△122	△47.3
위탁선거관리	96	50	△46	△47.9
동시조합장선거관리	-	-	-	-
새마을금고선거관리	162	86	△76	△46.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안정적 관리 필요

- 새마을금고는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1963년 재건국민운동⁸⁾의 향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⁹⁾으로서 개별금고(이하 “금고”라 함)와 금고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¹⁰⁾
- 과거,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1년 10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재건국민운동”은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벌인 범국민운동으로 1961년 6월부터 1964년 8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해체될 때까지 이어진 관 주도적 국민운동임. 이 국민운동은 복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협동 단결하고 자조·자립 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며 새로운 생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새마을금고는 1963년 재건국민운동의 향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노미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 경제법연구 제22권2호(2023), p.128.

10)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2021.10.19. 일부개정, 2022.4.20.시행)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는 <u>임원 선거의 관리</u>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u>위탁할 수 있다.</u>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 <u>양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u>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금고는 <u>이사장 선거의 관리</u>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u>위탁하여야 한다.</u> ② <u>금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u>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⑥ 중 <u>양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u> 이 경우 제23조의2 중 "<u>금고</u>"는 "<u>중앙회</u>"로, "<u>이사장</u>"은 "<u>회장</u>"으로,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는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로 보고, 제25조제6항 중 "<u>이사장</u>"은 "<u>회장과 상근이사</u>"로, "<u>감사</u>"는 "<u>감사위원장</u>"으로 본다.

□ 그동안 금고 이사장선거는 각 새마을금고의 자체적인 관리 하에 선거일이 제각각이었으나,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는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되어 내년 3월 5일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¹¹⁾

□ 그런데, 2025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선거상황 지휘·관리, 유관기관 협의, 통일적 지침 시달, 사건·사고 대응 등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총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선거 관리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 별도의 새마을금고 위탁선거 없이 2025년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 대비하여 2024년에 편성된 새마을금고선거관리 일반 예산(1억 4,400만원)과 비교해도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2025년도 예산안(2,100만원)이 훨씬 적은 것(△85.4%)을 알 수 있음.

11) 202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부칙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금고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2025년 3월 12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제14조)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서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함에 따라 내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이 3월 5일 실시하게 됨.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법률 제20179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24.1.30. 일부개정, 2024.7.31.시행) 제14조 (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비교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새마을금고 선거 관리일반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13	0(순감)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기기 관리	4	0(순감)
	새마을금고선거 등 편람제작	30	0(순감)
	선거사무안내책자 제작	65	0(순감)
	종합관리지침 제작	13	0(순감)
	선거사무일정표 제작	12	0(순감)
	상황실 직원 및 사무보조원 식대	3	0(순감)
	새마을금고선거 관련 업무추진비	4	4(전년 동)
	동시이사장선거 총람 제작	-	17(순증)
	합 계	144	2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p.6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은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¹²⁾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이하 생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위해 산출한 위탁선거경비(금고가 위탁선거를 위해 내야 할 비용)는 총 490억원(잠정)으로 해당 경비도 과도하다는 지적¹³⁾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까지 금고에 부담시킬 수는 없는 상황임.¹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고에서 납부받는 위탁선거경비와는 별도로 통일적인 업무수행(선거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최초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사무보조원 인부임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으로 1억 1,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필요예산 내역>

구 분		산출근거	증액요구
선거상황실 사무기기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기기 임차	9,700천원×3월 (선거가 25년 3월)	29백
	사무용품 구입 등	2,000천원×3월	6백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사무보조원 인부임	86,010원×2인×25일×3월	13백
	사무보조원 초과인부임	16,127원×2인×2시간×25일×3월	5백
	사무보조원 4대 보험료	18백×11.2451%	2백
	직원 등 식대	7천원×13인×20식×3월	5백
관리상황 지도점검 여비,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각 유관기관 업무추진	선거관리 지도점검 여비	70천원×2인×2일×8권역×1회	2백
	지침시달 업무협의	(500천원×2회(중앙))+(300천원×17시도)	6백
	선거상황실 운영 추진비	2,000천원×3월	6백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천원×5기관	1백
총합 인쇄비		《표-1》 24천원×1,500부	36백
계			111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시사저널(2024.10.28.), “[단독]새마을금고 이사장 뽑는 데 490억원...위탁선거 괜찮나”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고의 경비 부담을 고려하여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거 관리에 필수적인 최소경비만 산출하였다는 입장임.

<선거상황실의 주요 임무>

선거상황실 주요 임무	선거상황의 실시간 대응·지원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운영 필요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사무 통할·관리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투표·개표장비 운영 총괄
	- 주요현안 파악 및 처리기준 마련
	-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거, 농협과 수협 등의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상황실 운영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비용을 국가 예산에 편성한 바 있음.

<제1회~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 총괄관리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15년 예산 (제1회 조합장)	2019년 예산 (제2회 조합장)	2023년 예산 (제3회 조합장)
- 사무용품·사무기기 등 23 -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8 - 선거관리 지도·점검 여비 6 - 선거상황실 운영비 4 - 유관기관 업무협의 9 - 직원 등 식대 6 - 위탁선거 총람 제작 40	- 선거상황실 사무용품·사무기기 35 -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11 - 선거관리 지도·점검 여비 2 - 선거상황실 운영추진비 6 - 유관기관 업무협의 3 - 직원 등 식대 4 - 동시조합장선거 총람 제작 44	- 선거상황실 사무용품·사무기기 35 - 사무보조원 인부임 등 13 - 선거관리 지도·점검 여비 3 - 선거상황실 운영 추진비 6 - 유관기관 업무협의 4 - 직원 등 식대 5 - 총람 인쇄비 25
계 96	계 105	계 9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의 지도·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상황실 운영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절차 확립과 부정선거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필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78조(선거관리경비)¹⁵⁾에 따르면 위탁단체는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④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을 부담하고, 국가는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와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위탁선거관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편성 및 결산 과정을 거치지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만,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경우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단체 부담 위탁선거경비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경비
 산출 → 납부 → 집행 → 반환의 절차를 거침.

<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

구 분	내 용	
경비부담	위탁단체	국가
	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③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①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이하 아래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참고	⇒ 통상적인 국가재정 절차
위탁선거경비 운용 절차		
경비 산출	· 중앙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관할위원회 통지 · 관할위원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	
납부 (위탁단체 →선관위)	· 위탁선거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 :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집행 (선관위)	·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업무별·시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중앙, 시·도위원회는 통합적 사무수행을 통한 능률적 예산집행을 위해 관할위원회로부터 경비를 납부받아 일괄집행 가능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 집행잔액으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등 목적 외 집행 불가	
반환 (선관위 →위탁단체)	· 중앙, 시·도위원회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 ·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	
기타	·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 제출(관할위원회 → 상급위원회 → 중앙위원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절차사무편람」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¹⁶⁾ 위탁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¹⁷⁾된 국가사무로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위탁선거법」에는 위탁단체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¹⁸⁾만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도 국가예산 체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어 감사원의 결산검사 및 국회의 결산심사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국회 결산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음.

16)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18) 경비 부담주체,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반 관련 국회 시정요구 >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1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위탁선거 경비를 「위탁선거법」에 따라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납부 받아 단순 집행하고 잔액은 반환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의 수입·지출로 보기 어렵고, 선거의 규모 및 시기 예측 곤란 등의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수입·지출인 위탁선거관리 경비를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국가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①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② 현물출자, ③ 외국차관의

전대, ④ 차관물자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때, ⑤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¹⁹⁾ 「정부기업예산법」은 회전자금²⁰⁾을,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 수익금²¹⁾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위탁선거관리경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고, 제22대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은 현재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1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2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 제21대국회 관련 개정안 >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심사 결과
2104455	이해식의원	2020.10.08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명시함 (위탁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임기만료 폐기
2109879	임호선의원	2021.05.03		
2119266	전봉민의원	2022.12.30		

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에 관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반영한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²²⁾
-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²³⁾
- 그런데, 종전의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된

2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23)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감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²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23.7.18. 일부개정, 2023.10.19.시행)
제2장 조합	제2장 조합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u>군선거관리위원회</u> (이하 이 하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u>

24)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23.7.18.일부개정, 2023.10.19.시행)

25) 개정 전의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제기되며, 선거의 과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국제뉴스(220.2.8.), “대전 온누리신협, 선거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 충청일보(2021.5.16.), , “음성신협이사장 선거 ‘고소戰’” 등 참조

③ ~ ⑬ (생략)

<신설>

제3장 중앙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략)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
2, 제27조의3,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
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
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
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
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장 중앙회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7조의
3제1항-----.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
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위탁선거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²⁶⁾하여 의무위탁을 하는 공공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의 경우 선거운동 및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²⁷⁾하고 있는데, 현행 「위탁선거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중앙회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 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부터 적용하도록

26) 「위탁선거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27) 「위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음.²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려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제21대국회

28)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④ ~ ⑨ (생략)

에서 발의²⁹⁾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고, 현재는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9) 의안번호 제2111353호,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 노후화된 선거장비와 선거물품 사용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이나 투표용지의 파손 및 분실 가능성은 유권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 준비를 위하여 노후화된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교체 관련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은 선거장비의 제작 및 선거장비·물품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2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356억 4,300만원 대비 330억 9,800만원 감액(△92.9%)된 것임.

<2025년도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	%
선거장비및물품관리	35,643	2,545	△33,098	△92.9
선거장비관리	34,320	960	△33,360	△97.2
선거물품관리	1,323	1,585	262	19.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노후화된 선거장비·물품 신규제작 필요

-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은 적기에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5년도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 예산안에는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신규제작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선거장비 제작	- 사전투표운용장비 25,405 - 투표지분류기 7,360 - 기타비용 160	- 예산 미편성
선거물품 제작	- 예산 미편성	- 예산 미편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장비 중 회송용봉투접수기의 경우 선관위에 우편으로 회송되는 거소·재외·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신속하게 접수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2016년 제20대국회의원선거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이나, 내용연수(6년)를 경과한 상태이며 급격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³⁰⁾를 볼 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외 사전투표

30)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음.

자수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보유장비 수량(전국 총 469대)만으로는 신속한 접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보유수량(469대) 중 대다수인 423대(90.2%)가 내용연수 경과 및 주요부품(모터, 롤러, 스캐너 등)의 부식·마모 등 노후화로 우편투표 바코드 미인식 및 인식불량, 용지 걸림(Jam)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신규 장비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힘.

□ 또한, 우편투표개봉기의 경우 개표소에서 우편투표로 접수된 회송용봉투를 신속하게 개봉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 도입되었음. 회송용봉투 접수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라 우편투표 개표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량 부족으로 내용연수(7년) 경과한 2006년 구입장비도 현재까지 사용 중이나 제작업체의 사업종료에 따른 주요부품의 교체·수리 불가로 실사용가능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6년식 구형 개봉기의 경우 신형 대비 조립이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사용시 멈춤 등 고장이 다수 발생하여 개표 지연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사 전 투 표 율		
	(제6회) 11.49%	(제7회) 20.14%	(제8회) 20.62%
지 방 선 거			
국회의원선거	(제20대) 12.19%	(제21대) 26.69%	(제22대) 31.28%

<우편투표 개봉기 고장으로 인한 개표 지연 사례>

춘천지역 개표 우편투표 개봉기 고장으로 차질

등록 2014.06.04 20:54:04 | 수정 2016.12.29 19:3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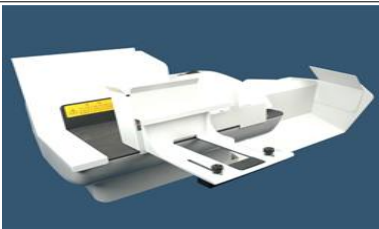
☐ ☐ ☐ ☐ 가 가



【춘천=뉴시스】 박혜림 기자 = 4일 오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 개표장의 우편투표 분류기가 오작동 돼 차질을 빚고 있다. 2014.06.04

※ 자료: 뉴시스(201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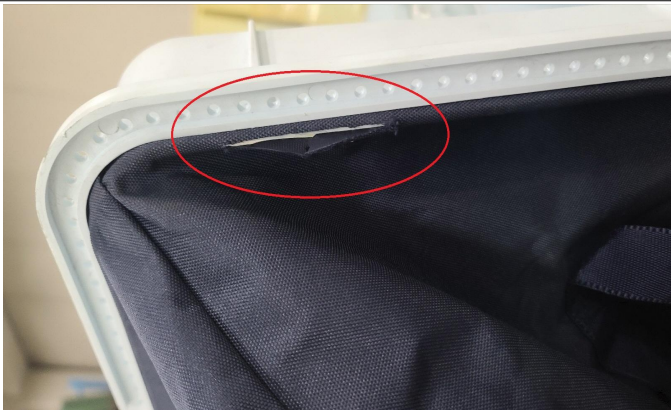
<노후화된 선거장비에 대한 설명>

구 분		용 도	사 진
선거장비	회송용 봉투 접수기	선관위에 우편으로 회송되는 거소·재외·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신속하게 접수 ※ 시간당 6,000매 정도 접수 가능	
	우편투표 개봉기	개표소에서 우편투표로 접수된 회송용 봉투를 신속하게 개봉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선거물품의 경우에도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자의 투표지를 투입하는 관내사전투표함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현재 보유수량 12,388개 중 대부분인 2014년도 제작분은 내용연수(8년) 경과 및 하단부 재질(천) 특성상 모서리 마모 등으로 사용불가 수량이 증가 중이며 일체형이 아닌 구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재질과 모양 및 구조 등을 개선하여 전량 신규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임.

<노후화되어 파손된 행낭식 투표함 사례>

사 진	설 명
	행낭식 투표함 손잡이 부분 뜯어짐
	모서리 마모로 인한 이음새 부분 찢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함 등으로 사용되는 대형투표함과 휠체어를 타고 투표하러 온 장애인 등이 기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대형 기표대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가능한 수량 대비 예상소요수량이 각각 부족하여 신규 제작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임.³¹⁾

<노후화된 선거물품에 대한 설명>

구 분		용 도	사 진	
선거물품	행낭식 투표함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자의 투표지를 투입하는 관내사전투표함으로 사용		
	대형 투표함	①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자의 회송용봉투 투입 ②사전투표 종료 후 선관위에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보관 ③선거일투표소의 투표함		
	대형 기표대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장애인 등이 휠체어를 탄 채로 기표할 수 있도록 폭이 넓게 만든 장애인 겸용 기표대임	 2016년형	 2018년형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선거장비의 경우 과거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3:7로 결정하여 부담한 선례³²⁾를 들어, 신규 선거장비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형투표함의 경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예상소요수량은 35,000개이나 현재 보유수량 중 실제 사용가능한 수량은 25,000여개 정도로 약 10,000개가 부족함. 대형기표대의 경우 예상소요수량이 31,400개이나 현재 보유수량 중 실제 사용가능한 수량은 16,400여개 정도로 약 15,000개가 부족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액의 30%를 , ② 선거물품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33)에 따라 신규 선거물품에 소요되는 예산액 전액을 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서 52억 3,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노후화된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필요예산 내역>

구 분		단 가	소요수량	소요액	요구액	비고
계				6,752백만원	5,233백만원	
선거장비	회송용봉투 접수기	4,200천원	469대	1,970백만원	591백만원	소요액의 30%
	우편투표개봉기	2,000천원	100대	200백만원	60백만원	
선거물품	행낭식 투표함	53,680원	15,000개	805백만원	805백만원	소요액 전액(100%)
	대형 투표함	47,720원	10,000개	477백만원	477백만원	
	대형 기표대	220천원	15,000개	3,300백만원	3,300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선거장비 중 대선과 국선에만 이용되는 장비는 전액 국비로 제작하여 왔으나, 지방 선거를 포함해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선거장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여 제작하여 왔으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제작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지방비 분담률은 71.7%임.

33)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제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 ⑤ (생략)

- 노후화된 선거장비와 선거물품 사용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이나 투표용지의 파손 및 분실 가능성은 유권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 준비를 위하여 노후화된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 교체 관련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예산내역 중 소요수량과 관련해서는 보유수량과 교체 필요수량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³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요수량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기계적 마모가 발생하는 선거장비와 달리 선거물품의 경우 오랜 기간 재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다음 사진과 같이 운반 및 보관을 잘못하여 파손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개봉기의 경우 각 구·시·군위원회에서 자체 구입하여 보관·관리 중으로 보유수량 내역만 확인하고 있어 부족수량 및 파손·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힘.

<운반 및 보관의 부주의함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물품 사례>

사 진	설 명
	변형된(뒤틀린) 대형투표함 몸통
	파손된 대형 기표대
	기표대 다리 부분 파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정당사무지원(1132-320)

○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후원금 모금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 체계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치후원금 센터 시스템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정당사무지원 사업은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 8,000만원 대비 1,400만원 감액(△17.5%)된 것임.

<2025년도 정당사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당사무지원	80	66	△14	△17.5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36	29	△7	△19.4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44	37	△7	△1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필요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로, 동법 제14조³⁵⁾에 따른 후원금 모금과 동법 제17조³⁶⁾에 따른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 자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 35) 「정치자금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 ② 삭제 <2010. 1. 25.>
- 36)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⑭ (생략)

□ 과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³⁷⁾에 따라 2024년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법률 제20348호 정치자금법 (2024.2.20. 일부개정, 2024.2.20.시행)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u><신 설></u> 2의2. (생략) 3. ~ 7. (생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u>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u> 2의3. (생략) 3. ~ 7. (생략)

37) 헌법재판소 2022.11.24. 선고. 2019헌마528등, 판례집 34-2, 553

[결정요지]

1.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엄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입법자는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이 조항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 실시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상시 후원회가 기존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지방의원 후원회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³⁸⁾

-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서버는 2006년 도입하여 2024년 현재 내구연한(7년)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즉, 서버가 고장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기탁금, 정치자금영수증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지경임.

<지방의원 후원회의 시스템 이용 불가 안내 팝업창>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 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온라인 후원금 기부는 **상시후원회인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만** 가능합니다.

기타 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계좌는 해당 후원회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

※ 자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정치후원금센터는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후원인이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지방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 직접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운영(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기능 제한)하여 후원인의 기부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지방의원후원회 사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불안정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특성상 후원인, 후원회 등의 민감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어 다른 시스템보다 보안기능이 중요한 바, 지난 2023년 외부기관 합동 보안컨설팅에서 지적³⁹⁾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시스템 보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후원회 확대에 따른 시스템 이용량 증가를 대비하여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고, 위조·변조 방지솔루션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5억 5,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필요예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수 량	단 가	총 액
클라우드 서버 도입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이관	1식	96,000,000	96,000,000
	PKI솔루션	2식	9,100,000	18,200,000
위·변조 방지솔루션	위·변조방지솔루션	2식	15,400,000	30,800,000
	Reporting Tool	4식	16,000,000	64,000,000
미들웨어	Webtob	16코어	2,952,000	47,232,000
	JEUS	16코어	8,562,000	136,992,000
하드웨어	HCI	3식	52,000,000	156,000,000
조달수수료			4,500,000	4,500,000
합 계				553,724,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 등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3자 합동으로 보안컨설팅(2023.7.3. ~ 9.22.)을 실시하였고, 해당 컨설팅 결과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지적된 바 있음.

□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⁴⁰⁾ 후원금 모금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 체계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40) [헌법재판소 2022.11.24. 선고 2019헌마528등, 판례집 34-2, 553]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 후원회 제도는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전부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국고보조금제도, 당비제도와 함께 신설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 회원의 자격 및 수, 금품모집방법 등에 변천이 있었다.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228; 헌재 2019. 12. 27. 2018헌마301등 참조). 또한 후원회 제도는 후원회 활동을 통하여 그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헌재 2019. 12. 27. 2018헌마301등 참조).”

5.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에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상 제작, 공모전 등의 홍보 사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현재 모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 사업을 전략적으로 일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선정하여 실시하는 등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공명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정치인의 기부 행위 제한 홍보,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 13억 5,400만원 대비 6억 1,400만원 감액(△45.3%)된 것임.

<2025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45.3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33	33	-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578	252	△326	△56.4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45	100	△45	△31.0
중앙 공식 온라인 영상채널 운영	377	274	△103	△27.3
정치후원금활성화 홍보	221	50	△171	△77.4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	31		순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유권자 의식 조사 예산 편성의 전액 삭감 필요

- 2025년도의 동 사업 예산안에는 “유권자 의식조사”의 명목으로 일반용역비(210-14) 1,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마다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선거 관련 제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공명선거기반조성 일반용역비 예산(210-14) 편성 현황>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예산	-	1,000만원	순증
연구용역 건수	-	1건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해당 예산은 전년대비 순증된 것으로 재보궐선거관리사업에서도 “유권자 의식조사”의 명목으로 일반연구비(260-01)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편성되어 있는 일반용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현황>

구분	공명선거기반조성	재보궐선거관리
2025년 예산안	1,000만원	1,700만원
연구용역 건수	1건	1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유권자 의식조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산이며,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의 유권자 의식조사는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임.

□ 하지만,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⁴¹⁾나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⁴²⁾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사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예산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나누어 연이어 실시하는 것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라고 할 것임.

-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관리사업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이 없었던 2021년 및 2023년의 경우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구용역 2건을 실시하지 않고, 1차례만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4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임.

42)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로 재선거는 임기개시 전의 사유(임기개시 전 사퇴나 사망) 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실시되는 반면, 보궐선거는 임기개시 후에 발생한 사퇴나 사망 등으로 실시됨. 「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는 제195조에서, 보궐선거는 제20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유권자 의식조사 연구용역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통령선거관리 (1131-300)			90,000 (82,500)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90,000 (85,000)				115,000 (집행중)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131-302)			90,000 (82,500)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11,000 (11,000)		10,000 (11,000)		17,000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10,000

※ 주석: 괄호() 안은 집행액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과거, 2021년과 2023년에 실시했던 재보궐선거 유권자의식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요 조사 항목이 투표참여 의식과 선거 분위기 평가, 선거 관련 제도 인식,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등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매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 1차례만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했던 선례와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있음.

<2021년 및 2023년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내용>

2021년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내용	2023년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내용																								
2021. 4. 7. 재보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3. 주요 조사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조 사 항 목</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투표참여 의식</td><td>• 투표여부 및 투표 미참여 이유</td></tr> <tr> <td>• 투표참여 시기 및 사전투표 이유</td></tr> <tr> <td>• 후보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td></tr> <tr> <td>• 지지후보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td></tr> <tr> <td>•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 및 투표 시기</td></tr> <tr> <td rowspan="3">선거분위기 평가</td><td>•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자 정보 주요 획득 경로</td></tr> <tr> <td>• 한국선거방송 선거정보 제공 도움 정도</td></tr> <tr> <td>• 공명성(깨끗함) 평가 및 긍정·부정 평가 이유</td></tr> <tr> <td rowspan="3">선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td><td>• 불법선거운동 경험 여부</td></tr> <tr> <td>•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제한 규정 개정 동의 여부 및 방향</td></tr> <tr> <td>•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 인지 여부</td></tr> <tr> <td rowspan="3">위원회 활동 평가</td><td>•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인지도</td></tr> <tr> <td>• 과태료·포상금 제도 인지도 및 돈 선거 차단 효과</td></tr> <tr> <td>• 홍보활동 접촉 경로 및 실제 도움 정도</td></tr> <tr> <td></td><td>•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도움되는 홍보활동</td></tr> <tr> <td></td><td>• 홍보활동의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 제고 효과</td></tr> </tbody> </table>	구 분	조 사 항 목	투표참여 의식	• 투표여부 및 투표 미참여 이유	• 투표참여 시기 및 사전투표 이유	• 후보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 지지후보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 및 투표 시기	선거분위기 평가	•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자 정보 주요 획득 경로	• 한국선거방송 선거정보 제공 도움 정도	• 공명성(깨끗함) 평가 및 긍정·부정 평가 이유	선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	• 불법선거운동 경험 여부	•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제한 규정 개정 동의 여부 및 방향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 인지 여부	위원회 활동 평가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인지도	• 과태료·포상금 제도 인지도 및 돈 선거 차단 효과	• 홍보활동 접촉 경로 및 실제 도움 정도		•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도움되는 홍보활동		• 홍보활동의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 제고 효과	제 1 장.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2023년 4월 7일(금) ~ 8일(토)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Ⅲ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투표여부 ▶ 투표 미참여 이유 ▶ 사전투표 여부 ▶ 사전투표 이유 ▶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지후보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2023.4.5. 재보궐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긍정 / 부정 평가 이유 ▶ 불법선거 경험 여부 및 대응 방법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인지도 / 투표시간 보장 여부 ▶ 정치인의 금품 음식물 제공 선거법 위반 인지도 ▶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인지도 /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효과성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수행 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개별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홍보활동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과제
구 분	조 사 항 목																								
투표참여 의식	• 투표여부 및 투표 미참여 이유																								
	• 투표참여 시기 및 사전투표 이유																								
	• 후보자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 지지후보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 및 투표 시기																								
선거분위기 평가	•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 후보자 정보 주요 획득 경로																								
	• 한국선거방송 선거정보 제공 도움 정도																								
	• 공명성(깨끗함) 평가 및 긍정·부정 평가 이유																								
선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해	• 불법선거운동 경험 여부																								
	•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제한 규정 개정 동의 여부 및 방향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 인지 여부																								
위원회 활동 평가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인지도																								
	• 과태료·포상금 제도 인지도 및 돈 선거 차단 효과																								
	• 홍보활동 접촉 경로 및 실제 도움 정도																								
	•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도움되는 홍보활동																								
	• 홍보활동의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율 제고 효과																								

※ 자료: 2021년 4.7.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2023년 4.5.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 더욱이, 재보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라는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서로 다른 사업(공명선거기반조성 및 재보궐선거관리)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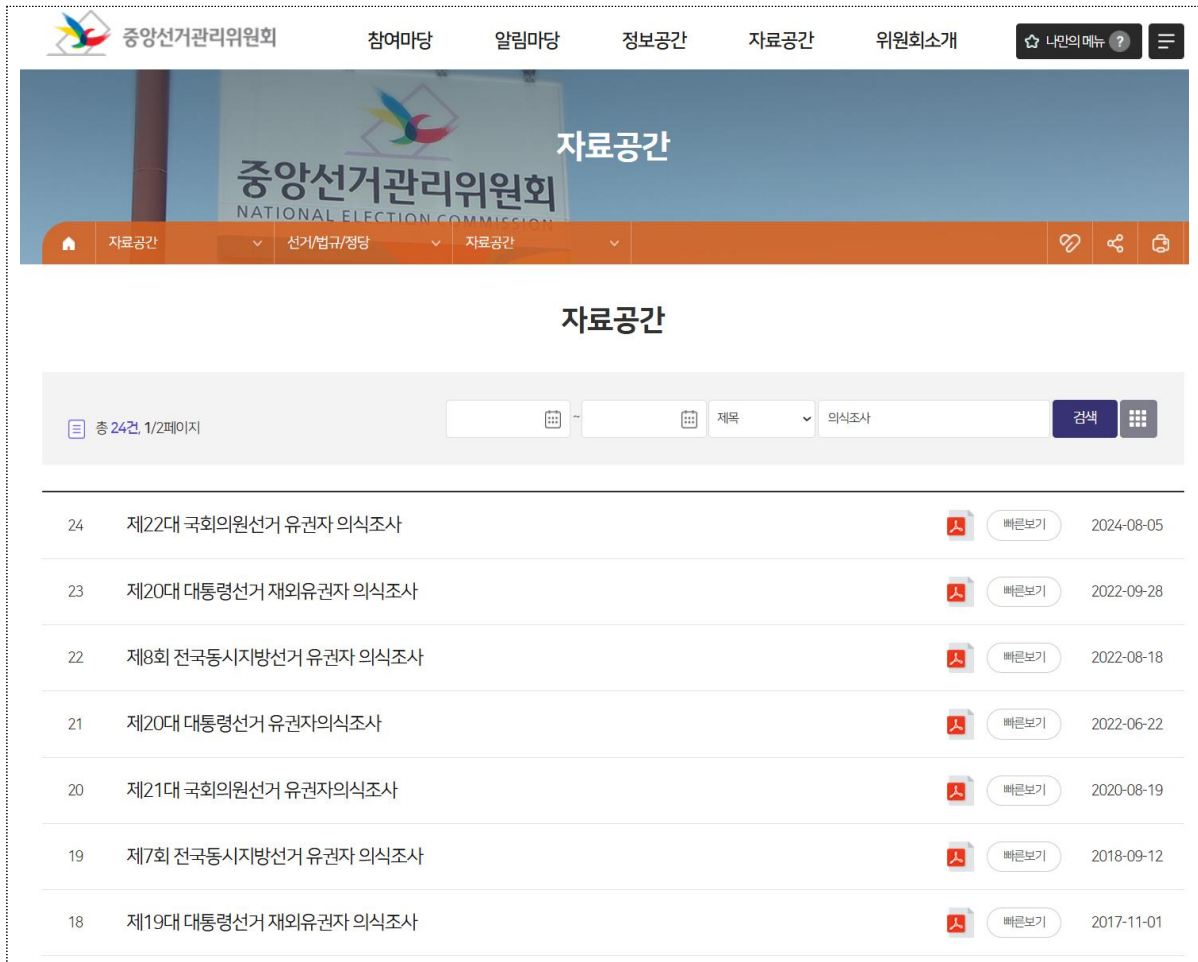
□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기반조성 사업에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자료공간에 지금까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만 공개하고,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조사의 목적은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선거 관련 제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³⁾

43) 재보궐선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들도 존재하는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의 유권자의식조사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공개 현황>



중양선거관리위원회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간 자료공간 위원회소개 ☆ 나의 메뉴 ?

자료공간

자료공간

총 24건 1/2페이지

제목 의식조사 검색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빠른보기	2024-08-05
23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빠른보기	2022-09-28
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빠른보기	2022-08-18
21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식조사		빠른보기	2022-06-22
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조사		빠른보기	2020-08-19
1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빠른보기	2018-09-12
18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유권자 의식조사		빠른보기	2017-11-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ldx=1129>)

다.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서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를 위한 경비는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것임.

<2025년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2,254	1,354	740	△614	△45.3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50	145	100	△45	△31.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p.138

- “유권자의 날”이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로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음.⁴⁴⁾
- 유권자의 날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해방 이후 보통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한 것인데, 1948년 5월 10일은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날임.

44)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유권자의 날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일인데, 기념일이 가장 많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근로자의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공휴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날(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로 양력으로는 통상 5월, 2024년은 5월 15일, 공휴일) 전후로 위치하여 국민적 인지도나 관심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⁴⁵⁾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6,000만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유권자 주간 홍보 4,000만원 등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45 - 중앙 60(60×1회) - 시·도 85(5×17시·도)	100(△45) -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60(전년동) - 유권자 주간 홍보 40(△45) (2.4백×17시·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p.143

□ 그런데, 2024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를 위하여 실시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 행사들이 기념일을 위한 기념식

45) 아시아경제(2018.5.10.), “빨간 날도 아닌데 달력엔 써있는 유권자의 날, 무슨 날인가요?”

이나 방송 제작, 공모전 등 선관위가 동원하여 실시하는 하향식(top-down) 행사이며, 예산 범위에서 모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행사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사진 전시, 포토존 설치 등 단순히 할당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임.

- 가령,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의 경우 걷기 챌린지를 통해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얼마나 제고했는지 의문임.⁴⁶⁾

<2024년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경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
중앙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 일시 : 5. 10. 14:00, 중앙위원회 대강당 - 주요 내용: 기념영상, 유공자 포상, 위원장 기념사	55,919
서울	싱그러운 꽃내음, 아름다운 유권자	- 시기 : 5. 24. - 투표체험, 페이스페인팅, 선거롤렛·퀴즈, 인생세컷	5,000
부산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행복한 유권자의 날” 행사 개최	- 시기 : 5. 9. -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과 연계 홍보	4,976
대구	“대한민국 유권자, 다와락페스티벌”	- 시기 : 5. 11. - 보컬·댄스팀 공연, 선거퀴즈 및 레크리에이션	5,000
인천	2024년 디카시(詩) 공모전	- 시기: 2월 ~ 6월 - 유권자 대상 공모전 개최	4,993
광주	유권자의 날 기념 “L=O T T” 기획 전시	- 시기: 5. 9. ~ 5. 14. - 광주미술관 전시장 이용, 민주주의 주제 사진 전시	5,000
대전	미디어 활용 “제13회 유권자 의 날” 홍보	- 시기 : 5. 1. ~ 5. 28. - 방송사(TJB)와 함께 라디오 홍보, 지방 일간지 카드뉴스	5,000
울산	“한 표의 의미” 영상제작 및 방송광고	- 시기 : 5. 10. ~ 5. 16. - 방송사(울산방송)와 영상 제작	5,000

46) 해당 행사는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19일 간 워크온(걸음체크어플)에서 5만 1천보 걷기와 손글씨(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인증샷 게시를 통해 참가자 중 추천하여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걷기미션 성공 600명 5천원 상품권 제공, 우수손글씨 2만원 20명 추천)으로 진행되었는데, 휴대폰 어플 걸음측정을 통한 개인별 상품권제공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의 취지에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문이 있음.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
세종	나는 유권자다! 포토존 운영	○ 시기 : 5. 8. ~ 5. 31. ○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 인근 포토존 설치	4,903
경기	기획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작, 방송	○ 시기 : 5. 10. ○ OBS(경인TV) 프로그램 이용 선거 발전사 소개	5,000
강원	유권자와 함께하는 ON & OFF 홍보	○ 시기 : 5. 1. ~ 5. 17. ○ 카드뉴스 제작, 전광판 등 시설물 이용 오프라인 홍보	5,000
충북	“민주주의를 봄” 행사	○ 시기 : 5. 2. ~ 5. 10. ○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선거홍보관 홍보	4,779
충남	유권자의 날 기념 제작 영상 홍보	○ 시기 : 5월 ○ 유권자 인식 개선 영상을 위원회 홈페이지, SNS 홍보	5,000
전북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	○ 시기 : 4. 19. ~ 5. 7. ○ 걷기 앱 플랫폼 활용 도민대상 걷기 챌린지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진행, 우수 손글씨 선정	5,000
전남	다문화가족의 “나의 선(選) 한 이야기” 한마당	○ 시기 : 4. 23., 5. 8. ○ 다문화가족이 유권자로서 경험했던 선거경험 발표	4,397
경북	제3회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영상 공모전	○ 시기 : 2월 ~ 6월 ○ 유권자 자기PR 영상 공모	5,000
경남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 지역 테마파크 활용 행사	○ 시기 : 5. 11. ○ 남해 원예예술촌에서 행사 실시, 골든벨 퀴즈	5,000
제주	유(권자)퀴즈 인 제주	○ 시기 : 3월 말 ~ 5월 ○ 제주도 내 축제 이용 유권자 퀴즈 이벤트	4,96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요약

□ 2025년도 예산안에서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31% 감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하여 영상 제작, 공모전 등의 홍보 사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현재 모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 사업을 전략적으로 일부 시·도선거관리위원

회만 선정하여 실시하는 등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표일과 별개로 유권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보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여 민주 시민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⁴⁷⁾

47) 다만, 현재 유권자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6.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지방의원후원회에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확충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당적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은 위법행위예방단속 및 사이버위법행위예방단속 등을 통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7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109억 4,700만원 대비 35억 800만원 감액된 것임.

<2025년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7,439	△3,508	△32.0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6,441	3,924	△2,517	△39.1
위법행위예방단속	3,731	2,973	△758	△20.3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509	324	△185	△36.3
정치자금조사	265	218	△47	△17.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지방의원 후원회 증가에 대비한 담당 인력 및 예산 확보 필요

- 과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4년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방의원 후원회 신설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지방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확충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⁴⁸⁾

48)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나.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만,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 의한다.
4. (이하 생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시·군위원회별 정치자금 담당 직원 1~2명⁴⁹⁾이 기존 업무에 병행하여 신규 정치자금 회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부터는 급격한 지방의원 후원회 수 증가로 정치자금 담당 직원 1인당 관련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위반사범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됨.

- 의원정수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해, 시·도의원은 872명, 구·시·군의원은 2,987명에 달하고, 10.24. 현재 기준 등록된 지방의원 후원회 수는 시·도의원 122개(14%), 구·시·군의원 120개(4%)에 불과하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부터는 지방의원 후원회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 담당 직원 업무>

구 분	업무 예시
후원회 관리	후원회 등록·접수·공고, 회계책임자 신고 접수, 정치자금영수증 관리, 예금계좌 신고 접수, 후원회 대표자 및 정관 등 각종 변경신고 처리
안내 및 사전검토	회계보고서 작성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질의 처리, 작성된 회계보고서(안)에 대한 형식적 요소 검토 등
접수 및 공고	기한 내 관할 회계보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접수 후 7일 이내 회계보고서 공고, 사본교부 및 열람 대비 정보공개용 회계보고서 작성
심사 및 조사	회계보고 서류심사, 조사요목 작성, 위반혐의 자료요구, 출석요구 및 조사, 금융거래자료 분석, 현지 출장,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조치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시·군위원회별 정치자금 담당 직원이 1명인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73% 정도임.

<지방의원후원회 설립 현황(10.24.기준)>

(단위 : 개, %)

구분		의원 정수(A)	후원회 등록 수(B)	비율(B/A)
서울	광역	112	19	17.0
	기초	427	30	7.0
부산	광역	47	5	10.6
	기초	182	1	0.5
대구	광역	32	0	0.0
	기초	121	0	0.0
인천	광역	40	8	20.0
	기초	123	9	7.3
광주	광역	23	2	8.7
	기초	69	1	1.4
대전	광역	22	0	0.0
	기초	63	0	0.0
울산	광역	22	1	4.5
	기초	50	0	0.0
세종	광역	20	0	0.0
경기	광역	156	36	23.1
	기초	463	35	7.6
강원	광역	49	4	8.2
	기초	174	5	2.9
충북	광역	35	1	2.9
	기초	136	2	1.5
충남	광역	48	8	16.7
	기초	177	4	2.3
전북	광역	40	11	27.5
	기초	197	5	2.5
전남	광역	61	14	23.0
	기초	247	21	8.5
경북	광역	61	1	1.6
	기초	288	1	0.3
경남	광역	64	9	14.1
	기초	270	6	2.2
제주	광역	40	3	7.5
계	광역	872	122	14.0
	기초	2,987	120	4.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지방의원후원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1인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77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확충 필요예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액 수	산출 근거
인부임	69억 6,681만원	86,010원×1인×25일×12월×270위원회 ⁵⁰⁾
보험료	7억 8,342만원	인부임×11.2451%
합 계	약 77억 5,000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편집

- 「정치자금법」이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을 위하여 사적사용제한(제2조제3항), 현금지출한도(제2조제4항), 모금·기부한도(제12조), 모금방법제한(제14조) 등 각종 제한 규정부터 수입·지출 회계절차(제34조부터 제44조까지)까지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설된 지방의원후원회에 대응한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 인력 및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한도가 1억 5천만원인데 반해, 지방의원후원회의 경우 시·도의원은 5천만원, 구·시·군의원은 3천만원에 불과하고, 매월 지급받는 수당의 격차⁵¹⁾도 커 지방의원의 경우 국

50) 270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 시·도선거관리위원회(17)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252)

회의원과 달리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회계보고에 있어 단계별 안내와 상시 질의응답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임.⁵²⁾

□ 따라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지방의원후원회에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회계사무 안내요원 확충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무보조인력 채용을 통한 안내보다는 상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1)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인데 반해(출처: 국회도서관,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2024.10.7.), 지방의원의 평균 연봉은 시·도의원은 6,538만원, 구·시·군의원은 4,539만원임.(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2024년 기준)

52)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6. (이하 생략)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③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위법 행위예방활동 사업에 39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억 1,700만원이 감액된 것임.

<2025년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1,318	10,947	7,439	△3,508	△32.0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6,499	6,441	3,924	△2,517	△39.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II-1), p.148

-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인력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제도로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⁵³⁾

53)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2. 29.>

④ 삭제 <2008. 2. 29.>

⑤ 삭제 <2008. 2. 29.>

⑥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구체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중앙 및 시·도 선관위) 또는 20인(구·시·군 선관위)이내의 인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음.

□ 그런데, 공정선거지원단의 임무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핵심가치인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중 특정 당적을 보유한 당원이 입단하여 특정 후보에게 정보까지 제공했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⁵⁴⁾

□ 현재 공정선거지원단의 채용 절차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당적 유무를 확인하고 채용 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지원자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나,⁵⁵⁾ 이는 지원자의 양심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확인절차는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54) 2023.6.26., 채널A, “선거 감시한다며...몰래 공정선거지원단 들어간 당원들”

55)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 (규칙 제2조의3제3항·제2조의4제4항 관련) <개정 2024. 3. 21.>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본인은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아울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자료: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

□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의 경우 당적 유무 조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⁵⁶⁾ 공정선거지원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당적 유무 조회의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는 당원이 당적을 숨기고 채용되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수당 및 실비 등을 반환하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해촉 절차만 진행하고 있으나, 해촉절차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려우므로 당원이 당적을 숨기고 채용된 후 적발된 경우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56)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됨.

-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의 당적 확인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음.

<공정선거지원단의 당적확인 절차 관련 2024년 국정감사 회의록>

○조승환 위원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게 있지요, 시군구에서 다 선발해 가지고서. 여기 보면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당 당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선발할 때 비당원 확인서 하나 제출받는 것 외에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제적으로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심사하고 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그 당원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당적 조회를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준도, 지금 당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당적이 없었던 걸로 해서 이게 공정한냐 아니냐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당원이면서 당원 아닌 걸로 써서 끝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한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선택된 사람들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요?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계약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선발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략) 공정선거지원단을 꾸릴 때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가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할지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료: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25.) 참고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당적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객관성·공정성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선거여론조사심의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2억 9,300만원 대비 5,500만원 감액(△18.7%)된 것임.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심의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선거여론조사심의	293	238	△55	△18.7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68	68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운영	120	65	△55	△45.8
선거여론조사심의강화	105	105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인력 육성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를 하고 정당·언론사·선거여론조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심의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취득	3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선거여론조사 관련 연구용역	31
불법 선거여론사 예방·단속	조사활동비 및 특근식대	27
분석프로그램 연간 구독권	분석프로그램(SPSS) 연간 구독권 구입	41
선거여론조사 제도 선진화 및 생태계 발전·협력체제 구축	조사기관 대상 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	3
계		1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

양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⁵⁷⁾

□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방식에 대한 ① 내용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를 관철하기 위한 ② 절차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내용적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

57)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08조제5항). 그리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96조).

- 다음으로 절차적 규제는 (1)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인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제,⁵⁸⁾ (2)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제,⁵⁹⁾ (3)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등록제⁶⁰⁾로 구분할 수 있음.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적·절차적 규제 외에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

58) 「공직선거법」은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방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제8조의9).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요건	내용
시스템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구비
인력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직원
매출액	연간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5천만원)
사무소	조사시스템 및 상근직원 수용 가능 사무소

59)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와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108조제3항).

60)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제108조제7항).

여론조사기준 개정,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육성,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 조사기관 대상 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문인력 양성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내역	집행액	비고
2020	사회조사분석사 ⁶¹⁾ 필기 및 실기시험 지원 등	2,486	
2021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및 실기시험 지원 등	3,994	
2022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및 실기시험 지원 등	761	
2023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및 실기시험 지원 등	3,186	
2024	사회조사분석사 필기 및 실기시험 지원 등	-	진행중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선거여론조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내역>

연번	설 명 회 명	개 최 일	참석 기관·단체수	참석 인원
1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설명회	2017. 02. 28.	35개	48명
2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2018. 03. 14.	49개	69명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2020. 01. 16.	43개	52명
4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2021. 12. 14.	31개	44명
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2023. 12. 06.	33개	49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 사회조사분석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부, 기업, 정당 등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사회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제도적 장치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제기는 여전한 상황이며,⁶²⁾ 같은 시기에 실시된 선거여론조사의 상반된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2024년 10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단위: %)

정당 여론조사기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조사기간	조사방법
한국갤럽	30	30	6	10.22.~24.	무선전화면접
엠브레인퍼블릭	30	28	8	10.21.~23.	무선전화면접
미디어토마토	50.4	22.4	8.8	10.21.~22.	무선ARS
여론조사공정	34.3	32.7	7.6	10.22.	무선ARS
여론조사꽃	52.0	28.6	8.8	10.18.~19.	무선ARS
리얼미터	44.2	31.3	7.4	10.17.~18.	무선ARS(97%) 유선ARS(3%)

※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0.26.기준 여론조사결과 등록 순서대로 나열)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5/list.do?menuNo=200467>)

□ 특히, 최근에는 정치 브로커가 선거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⁶³⁾

62) 미디어펜(2024.1.9.),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신뢰도 문제 없나”
부산일보(2023.8.17.), “공정, 객관성 상실한 여론조사”

63) YTN(2024.10.25.), “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압수수색”
한국일보(2024.10.21.), “여론조사가 후보 텔레 마케팅으로 변질...민심 왜곡하는 정치 브로커”

- 물론, 조사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조사결과의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 등의 상이한 조사방법, 유·무선전화의 비율, 조사표본의 가중치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세 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시행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ARS조사가 정치적 무관심 층이 많은 20대를 과소표집하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40대를 과대표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응답률 또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⁶⁴⁾
- 그 밖에도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여론조사 실시 기관의 성향에 따른 응답자의 계층별 표본 구성, 문항 구성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편향성을 띌 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정치과정에 반영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에 임박해서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우선할 필요가 있

64) 최종호, “조사방법 차이가 정치적 태도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3호 2022년(통권 56호), p.33

음.

-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과거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의 불공정성을 반성하며 자율적으로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서도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으로 과학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음.⁶⁵⁾

□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관한 문제 제기와 대책마련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음.

<여론조사의 공정성 관련 2024년 국정감사 회의록>

○김종양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론조사 조작설까지 떠돌면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생략)

○정춘생위원 명태균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총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중략)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65) 한국기자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전문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장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제4조(과학성) ① 여론조사는 과학성이 생명이다. 미디어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② ~ ④ (생략)

제5조(공정성) ① 미디어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어 선거 운동에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결과 보도는 선거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하며, 미디어의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생략)

뒤집는,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윤석을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 내지 조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된 결과를 여러 언론과 정치 유튜버들이 퍼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략)

○이달희위원 아무쪼록 오늘 우리 행안위의 국감에서의 귀한 논쟁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풍토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생략)

○배준영위원 일부 여론조사는 여론을 움직이는 걸 떠나서 조작하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여론조사의 품질과 그 회사의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생략)

○김상욱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잘못된 여론조사가 없도록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나요?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략)

○이해식위원 지난 10월 14일 날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지금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걸 언제 보고가 됩니까? (중략)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서, 혹시 그게 있으면,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0., 10.25.) 초고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객관성·공정성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응답률 이하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선

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확대, 여론조사결과 왜곡하여 공표·보도한 자의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24.10.25. 현재)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조경태의원	2200577	24.06.18.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 - 응답률이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금지
박정훈의원	2204761	24.10.17.	-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의 처벌을 강화

8.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3)

- 선거기록관 건립과 연계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고 선거·학술 자료 및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13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 14억 4,2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 감액(8.9%)된 것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 2025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442	1,313	△129	△8.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기록관 건립과 연계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⁶⁶⁾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선거연수원 내 부지에 총사업비 243억 8,100만원 상당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확보하여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선거기록관을 건립 중임.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세부사업 내 선거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영구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선거기록관 건립 내역사업을 편성하여 2023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관련 경비를 집행 중임.

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선거기록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방안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소 계	1 차 (2024년)	2 차 (2025년)	3 차 (2026년)
개 발	영구기록 관리시스템	2,363	349 (분석 등)	1,423 (인수, 평가·폐기 등)	591 (포맷변환, 서비스관리)
인 프 라 (H/W 및 S/W)		1,129	-	323 (DBMS, 안티바이러스 등)	806 (B스토리지, 백업솔루션)
감리용역		254	-	167	87
소 계(계획예산)		3,746	349	1,913	1,484
소 계(편성예산)		3,746	349	349	3,048(예상)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경비는 2024년 예산액과 동일한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37억 4,600만원(감리용역 2억 5,400만원 포함)의 총사업비가 책정된 3개년 계속사업으로 2024년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이 편성될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 30억 4,800만원의 경비 편성이 필요하고, 2026년도에 과업물량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5억원 이상의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바,⁶⁷⁾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3억 4,900만원의 경비로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감리용역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감리용역 지급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관 내 단위면적당 기록물 수용능력 및 보존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식 서가 설치를 계획 중이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에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를 추진 중임.

□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된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관 준공(2025년 12월) 이후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이 설치될 경우 레일 매립을 위한 섬유보강 콘크리트 타설 및 바닥면 에폭시 코팅 과정 등이 추가되어 5~6억원 정도의 추가 설치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밝히고 있음.

□ 이에,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선거기록관 건립과 연계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67)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개발, 의무 감리용역 및 선거기록관 이동식 서가 설치 등을 위해 17억 1,7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구체적으로, 시스템 개발 등에 13억 9,700만원, 시스템 개발 감리용역 1억 6,700만원, 선거기록관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 1억 5,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선거기록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시스템 개발 등	1,397
	시스템 개발 감리용역	167
	선거기록관 이동식 서가 매립 레일 설치	153
계		1,717

9. 국제교류협력(7132-345)

○ A-WEB은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설립한 세계 최대 수준의 선거기관 협의체 네트워크로 지난 10년 간 쌓아온 회원기관, 각종 국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거분야 국제교류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원조를 통한 기여외교가 빈곤 탈출과 경제개발에서 나아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 ODA 창구로서 A-WEB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선거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발제를 지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안정적 정착 및 활동·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9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11억 3,000만원 대비 2억 400만원 감액된 것임.

<2025년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제교류협력	1,130	926	△204	△18.1
국제교류협력	218	190	△28	△12.8
A-WEB 운영지원	912	736	△176	△19.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A-WEB을 통한 민주주의 ODA 확대 검토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운영비로 보조금 7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이 감액(19.3%)되었음.
-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적 노력하에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이 참여하여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⁶⁸⁾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경험·정보 등을 공유하여 선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A-WEB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사무처 유치국으로 선정되어 2014년 4월 A-WEB 사무처가 출범하였음(2014.4., 송도 G타워 → 2023.1. 송도 미추홀타워).
- 그런데,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A-WEB이 ODA사업⁶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반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인 외교부로부터 부적합 의견을 받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68) A-WEB은 국내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동 기관은 정부간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며, 국제기구 성립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International juridical or legal personality), 행위능력(Legal Capacity) 및 특권과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에 대한 부분이 설립당시의 선거기관협의회 헌장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3.12.).

69) ODA사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고, 2022년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점수 56.9점(100점 만점70))을 받으며 예산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를 받은 바 있음.

- 그 결과, 2014년 A-WEB 사무처 설립 이후 증가해오던 A-WEB 지원 보조금은 2019년도에 전년도의 19% 수준으로 크게 감축되었고, 2023년도부터는 A-WEB의 보조금(ODA사업+운영지원) 중 ODA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되, 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원 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음.

<연도별 A-WEB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63	1,314	3,309	7,948	7,896	1,501	1,189	1,373	1,313	782	912	73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A-WEB의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외에도 회원국의 기부금, 연회비 등이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2024년 기준 75.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수입을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70) 평가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조사업의 타당성(80점)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20점)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A-WEB보조금은 보조사업의 타당성에서 56.9점을,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에서 11.0점을 기록함.

<A-WEB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고
합 계		1,326	1,527	1,447	1,041	1,205	
국 고	A-WEB보조금 (ODA사업 + A-WEB 운영지원)	1,189	1,373	1,313	782	912 (75.7%)	'23년 부터 A-WEB 운영지원 보조금만 지급
회원국 부 담 (보조금 외)	연 회 비 ⁷¹⁾	137	154	134	259	293 (24.3%)	'24. 9. 기준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재 2023년 이후 크게 줄어든 운영지원 보조금으로는 A-WEB 사무처 소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무처에 따르면 인건비나 기본경비도 부족하여 회원국의 연회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⁷²⁾
- 전년보다 감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국제회의 참가, 집행이사회 개최, 홍보활동 등 주요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A-WEB 사무처 소재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 사업별 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A-WEB 지원 보조금		국제회의 참가	집행이사회 개최	홍보활동	합계	증감률
2024년 예산	912	주요 사업	39	160	24	223	
2025년 예산안	736		19	30	10	59	△73.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편집

71) 연회비는 국가별 10,000\$이고, 2023년 기준 110개국 119개의 회원기관이 있으나, 연회비 납부회원수는 2023년 8월 기준 12개국(대한민국, 대만, 남아공,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그치고 있음.

72) A-WEB 사무처에 따르면 인건비 부족으로 10호봉을 초과한 직원도 10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중임.

- A-WEB 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에 사무처 소재지를 이전하자는 주장도 일부 회원국에서 제기되었으나,⁷³⁾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근거로 사무처 소재지를 유지한 바 있음.
- 하지만, A-WEB 사무처 소재국으로서 현재와 같이 인건비와 기본경비 충당도 어려운 금액을 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A-WEB의 설립 취지 및 그 기능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세계선거기관 협의체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사무처를 유치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A-WEB은 전 세계 110개국 119개 회원기관⁷⁴⁾을 대상으로 선거관리 경험·정보·지식 등을 공유하며 모범 사례와 정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 민주주의의 퇴조를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4년 1월 제정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A-WEB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A-WEB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⁷⁵⁾

73) A-WEB 사무처에 따르면 인도에서 개최한 제4차 총회(2019.9. 인도 벵갈루루) 개최를 앞두고 회원국 중 관련 주장이 제기됨.

74) 참고자료 참조

75)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WEB의 역할과 필요성>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A-WEB) was established in 2013 with a vision to enhance EMB capacity-building for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electoral processes.(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선거 과정을 위한 선거관리기구(EMB)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Comprising a membership of 118 EMBs from 108 countries, A-WEB seeks to build the capacity of its member through training programmes such as the election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me, the ele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gramme, and the election visitor programme. Since its establishment, A-WEB has also held dialogue for a focusing on selected topical elections and election management issues to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s.(설립 이후, A-WEB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와 선거 관리 주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의 장도 마련해 왔습니다.) (중략)

In sum, international bod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elections and EMBs. They enable knowledge sharing between peers across borders on best practices, as well as policy transfer or the provision of informal support. They can also bring civil society into conversations to enable them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with those running elections.(그들(A-WEB)은 국경을 넘어 모범 사례에 대한 지식 공유와 정책 전환 또는 비공식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민 사회를 대화에 참여시켜 그들이 선거를 운영하는 이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ternational bodies can also collectively champion the case for elections – whether that means more financial support for electoral officials, developing ideas for electoral form or thinking about new innovations. They therefore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dress democratic recession. (따라서, 그들(A-WEB)은 민주주의 후퇴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료: Toby S. James, Khabele Matlose & Victor Shale, "Safeguarding election management bodies in the age of democratic recession, South 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2023), pp.323-336.

<A-WEB 대륙별 회원기관 현황>

대륙	국가수	기관수	주요 국가
유럽	18	18	프랑스, 포르투갈, 튀르키예, 폴란드 등
아시아	24	25	대한민국, 인도,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메리카	26	30	캐나다,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아프리카	35	39	남아공,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오세아니아	7	7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합계	110	119	

※ 자료: A-WEB 사무처

□ A-WEB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전 세계 선거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회원국 간의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역할은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A-WEB 주요 활동 현황>

2024.3. 12차 집행이사회 개최(인천)	2023.10. 창립 10주년 컨퍼런스(인천)
	
2019.10. 선거관리역량 강화 연수(인천)	2019.7. 선거관리역량 강화 연수(인천)
	

※ 자료: A-WEB 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사무처 소재국으로서 A-WEB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집행이사회) 및 국제회의(국제 컨퍼런스) 참가, 회원기관 선거법 개선

장려 및 자문과 세계선거제도 비교 분석 수행으로 1억 6,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A-WEB 추가 필요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소요금액
정기회의(집행이사회) 개최 및 총회 후속회의 참가	45,000천원×2건	90
국제회의(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및 참가	2,000천원×10회	20
회원기관 선거법 개선 장려 및 자문	20,000천원(참관단 1회당)×2회	40
세계선거제도 비교분석	온라인 자료 시각화 등	10
계		16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A-WEB은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설립한 세계 최대 수준의 선거기관 협의체 네트워크로 지난 10년 간 쌓아온 회원기관, 각종 국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거분야 국제교류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⁷⁶⁾ 원조를 통한 기여외교가 빈곤 탈출과 경제개발에서 나아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⁷⁷⁾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

76)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유치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논문도 존재함. 정한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연구방법 논총 2016년 가을호 제1권 제2호

77) “한국은 2022년 기준, 27.9억 달러 규모의 ODA를 지원해 OECD에서 16위 공여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성공적 전환은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취이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자유민주주의 위상에서 보자면 민주주의 원조 수준은 낮은 편이다. (중략)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세계선거관리협의회(A-WEB)가 민주적 선거 지원과 각국 선거관리기관 간 교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분야 활동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보조금과 함께 지원되던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재는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기왕에 한국이 주도해 선거관리위원회들의 국제적 협의체를 만들고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의 법적, 재정적 위상을 개선해 민주주의 원조의 창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략)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민주주의 원조의 틀을 짤 필요가 커졌다. 원조를 통한 기여외교는 빈곤 탈출과 경제개발에서 나아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가 자리잡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발전도 안정적 평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숙중,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 ODA의 개혁 방안”, ADRN 이슈브리핑(2024), pp.2-10.

주주의 ODA 창구로서 A-WEB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위해 ODA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중양아시아 등 전략지역 투자에 총 2,00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 예산안 중 전략지역·분야 ODA 강화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안	비 고
아프리카	9,301	10,720	- 쌀 원조 확대(10→15만톤) 등
중양아시아	1,629	2,021	- 병원 건립, 에너지 등 유무상 원조 확대
기업 해외진출	20,931	22,733	-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41	50	- 1인당 단가 10→15백만원(+50%)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예산안 홍보자료(2024.8.27.), p.32, 57

참 고

A-WEB 회원기관 현황

연 번		대륙	국가명	기 관 명
국가	기관			
1	1	아프리카	앙골라	선거위원회(NEC)
2	2	아프리카	베냉	독립선거위원회(CENA)
3	3	아프리카	부르나파소	독립선거위원회(CENI)
4	4	아프리카	부룬디	독립선거위원회(CENI)
5	5	아프리카	카메룬	선거위원회(ELECAM)
6	6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독립선거위원회(IEC)
7	7	아프리카	지부티	독립선거위원회(CENI)
8	8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독립선거위원회(CENI)
9	9	아프리카	이집트	선거위원회(NEA)
10	10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거위원회(NEBE)
11	11	아프리카	가봉	선거위원회(GEC)
12	12	아프리카	감비아	독립선거위원회(IEC)
13	13	아프리카	가나	선거위원회(EC)
14	14	아프리카	기니	독립선거위원회(CENI)
15	15	아프리카	케냐	독립선거·선거구위원회(IEBC)
16	16	아프리카	레소토	선거위원회(IEC)
17	17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선거위원회(NEC)
18	18	아프리카	리비아	고등선거위원회(HNEC)
19	19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독립선거위원회(CENI)
20	20	아프리카	말라위	선거위원회(MEC)
21	21	아프리카	말리	독립선거위원회(CENI)
	22			지역선거청(DGTC)
22	23	아프리카	모리셔스	선거청(OEC)
23	24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거위원회(CNE)
24	25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독립선거위원회(CENI)
25	26	아프리카	르완다	선거위원회(NEC)
26	27	아프리카	상투메 프린시페	선거위원회(NEC)
27	28	아프리카	세네갈	독립선거위원회(CENA)
28	29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거위원회(EC)
	30			정당등록위원회(PPRC)
29	31	아프리카	소말리아	독립선거위원회(NIEC)
30	32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거위원회(IEC)
31	33	아프리카	남수단	선거위원회(NEC)
32	34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거위원회(NEC)
	35			잔지바르 선거위원회(ZEC)
33	36	아프리카	토고	독립선거위원회(CENI)
34	37	아프리카	튀니지	독립선거위원회(ISIE)
35	38	아프리카	우간다	선거위원회(EC)
36	39	아프리카	잠비아	선거위원회(ECZ)
37	40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내무부 선거관리국(NED)
38	41	아메리카	바하마	의회등록부(PRD)
39	42	아메리카	바베이도스	선거·선거구위원회(EBC)
40	43	아메리카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TSE)
41	44	아메리카	브라질	최고선거법원(TSE)
42	45	아메리카	캐나다	선거위원회(EC)

연 번		대륙	국가명	기 관 명
국가	기관			
43	46	아메리카	콜롬비아	국가등록청(RNEC)
	47			선거위원회(CNE)
44	48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최고선거법원(TSE)
45	49	아메리카	도미니카	선거청(EO)
46	50	아메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JCE)
	51			최고선거재판소(TSE)
47	52	아메리카	에콰도르	선거위원회(CNE)
	53			선거분쟁재판소(EDT)
48	54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최고선거법원(TSE)
49	55	아메리카	과테말라	최고선거법원(TSE)
50	56	아메리카	가이아나	선거위원회(GEC)
51	57	아메리카	아이티	임시선거위원회(PEC)
52	58	아메리카	자메이카	선거위원회(ECJ)
53	59	아메리카	멕시코	연방선거위원회(INE)
54	60	아메리카	니카라과	최고선거법원(CSE)
55	61	아메리카	파나마	선거법원(TE)
56	62	아메리카	파라과이	최고선거법원(TSJE)
57	63	아메리카	페루	선거재판소(JNE)
	64			국가등록청(RENIEC)
58	65	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	선거위원회(SCE)
59	66	아메리카	세인트루시아	선거부(ED)
60	67	아메리카	수리남	독립선거위원회(IEC)
61	68	아메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선거·선거구위원회(EBC)
62	69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선거위원회(CNE)
63	70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독립선거위원회(IEC)
	71			독립선거쟁송위원회(IECC)
64	72	아시아	방글라데시	선거위원회(ECB)
65	73	아시아	부탄	선거위원회(ECB)
66	74	아시아	캄보디아	선거위원회(NEC)
67	75	아시아	인도	선거위원회(ECI)
68	76	아시아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KPU)
	77			선거감독기관(BAWASLU)
69	78	아시아	이라크	고등선거위원회(IHEC)
70	79	아시아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71	80	아시아	대한민국	중앙선거위원회(NEC)
72	81	아시아	키르기즈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73	82	아시아	레바논	선거감독위원회(SCE)
74	83	아시아	몰디브	선거위원회(ECM)
75	84	아시아	몽골	선거위원회(GEC)
76	85	아시아	미얀마	연방선거위원회(UEC)
77	86	아시아	파키스탄	선거위원회(ECP)
78	87	아시아	팔레스타인	중앙선거위원회(CEC)
79	88	아시아	필리핀	선거위원회(COMELEC)
80	89	아시아	스리랑카	선거위원회(EC)
81	90	아시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CEC)
82	91	아시아	태국	선거위원회(ECT)
83	92	아시아	동티모르	선거위원회(CNE)
84	93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
85	94	아시아	예멘	최고선거·국민투표위원회(SCER)

연 번		대륙	국가명	기 관 명
국가	기관			
86	95	유럽	알바니아	중앙선거위원회(CEC)
87	96	유럽	벨라루스	중앙선거위원회(CEC)
88	97	유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앙선거위원회(CEC)
89	98	유럽	불가리아	중앙선거위원회(CEC)
90	99	유럽	크로아티아	국가선거위원회(SEC)
91	100	유럽	프랑스	제헌의회(CC)
92	101	유럽	조지아	중앙선거위원회(CEC)
93	102	유럽	헝가리	선거청(NEO)
94	103	유럽	코소보	중앙선거위원회(CEC)
95	104	유럽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CEC)
96	105	유럽	몰도바	중앙선거위원회(CEC)
97	106	유럽	폴란드	선거위원회(NEC)
98	107	유럽	포르투갈	선거위원회(CNE)
99	108	유럽	루마니아	선거청(PEA)
100	109	유럽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CEC)
101	110	유럽	세르비아	국가선거위원회(REC)
102	111	유럽	튀르키예	선거위원회(SEC)
103	112	유럽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원회(CEC)
104	113	오세아니아	호주	선거위원회(AEC)
105	114	오세아니아	피지	피지 선거청(FEO)
106	115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PNGEC)
107	116	오세아니아	사모아	선거청(OEC)
108	117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선거위원회(SIEC)
109	118	오세아니아	통가	선거위원회(TEC)
110	119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선거청(EO)

10. 위원회운영(7132-351)

- 원활한 선거관리사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관련 예산의 적정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위원회운영사업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17억 6,100만원보다 10억 5,800만원 감액(△60.1%)된 것임.

<2025년도 위원회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위원회 운영	1,761	703	△1,058	△6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2024년 예산액 11억 9,200만원보다 6억 3,700만원 감액된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검토수당으로 2024년 예산액 8,700만원보다 7,6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음.

<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 및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위원회 참석수당	1,192	555	△637
안전검토수당	87	11	△76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⁷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해 왔음.⁷⁹⁾

78)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2023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지적받은 바 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지급 관련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비상임위원들에게 안전검토 여부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등과 달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20년 예산안 행안위 검토보고	○중앙선거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제정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일당·여비 기타 실비보상만 지급하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에 반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예산편성을 재검토할 것
2021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예직인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 수당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검토 수당에 대해서도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안전검토시마다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예산안 행안위 검토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조속히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과 관련된 미흡한 법적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대체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임
2023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하여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안전검토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전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별 30만원을 지급한다.

□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부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안전별 10만원을 지급하던 안전검토수당 지급 기준액을 안전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한 노무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심사 명목으로 심사안전의 수에 따라 건별로 안전검토수당을 자의적으로 지급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별 10만원으로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⁸⁰⁾

□ 먼저,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 사항 결정 및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회의체 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활동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⁸¹⁾

□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회의참석 수당으로는 중앙위원회가 연 10회 미만, 시·도위원회는 연 6회, 구·시·군위원회는 연 3

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전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전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8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회 미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어 선거사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현황>

- 중앙: 참석수당 12백만원 [150천원×8인×1회×12월×0.82]
- 시·도: 참석수당 86백만원 [120천원×7인×1회×12월×17시도×0.5]
- 구·시·군: 참석수당 457백만원 [100천원×8인×1회×12월×252구시군×0.189]

□ 이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중앙위원회는 연평균 16회, 시·도위원회는 연평균 11회, 구·시·군위원회는 연평균 10회를 개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 횟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중앙(1)	13	18	13	21	16	16
시·도(17)	174	196	157	250	187	11
구·시·군(251)	2,137	2,566	1,504	3,849	1,984	10

※ 2019~2023년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 개최횟수는 시·도별, 구·시·군별 연간 위원회 개최 합계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2025년에는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관리 등을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위원회 개최 횟수보다 위원회를 다수 개최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과 관련하여,

2024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⁸²⁾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안전검토수당의 지급근거 및 지급액이 명확화되었다는 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헌법기관의 장 및 국무위원급의 직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에 걸맞은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원활한 선거관리사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 대한 예우 차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관련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사무수행을 위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9억 3,100만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8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수당·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실제 개최 소요 횟수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9억 3,1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는 설명임.

<위원회운영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위원회 참석수당	(중앙) 150천원×9회×8인	10,800
	(시·도) 120천원×7회×7인×17 시도	99,960
	(구·시·군) 100천원×3회×8인×252구시군	604,800
공명선거활동추진비	(위원장) 2,900천원×1인×12월	34,800
	(위원) 2,150천원×7인×12월	180,600
계		930,960

11. 청사관리(7132-354)

○ 신축청사 이전경비, 청사유지관리 필수경비,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청사관리사업은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각급위원회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지·관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5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청사관리사업 239억 5,900만원보다 10억 4,600만원 증액(4.35%)된 것임.

<청사관리사업 2025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청사관리	23,959	25,005	1,046	4.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에서 청사관리 사업 경비는 2024년 예산액 대비 10억 4,600만원이 증액(4.3%)된 25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사업비 10억 4,600만원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축청사 이전, 기존 청사 유지관리, 노후청사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신축이나 복합개발청사로 사업시행 중인 청사 이전비용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청사와 유상임차를 통한 청사를 혼용하여 운영 중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현황>

(단위: 개, %)

구분	위원회수	자체청사	유상임차 (자체청사 미보유)
중앙	1(100)	1(100)	-
시·도	17(100)	17(100)	-
구·시·군	252(100)	193(76.6)	59(23.4)
합계	270(100)	211(78.1)	59(21.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전대상 청사는 신축청사 8개, 복합청사 3개, 사용승인 1개, 신설 2개 등 총 14개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이전대상 청사 현황>

구분	위원회명	위원회수
신축청사 ⁸³⁾	광주광역시남구, 양양군,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서원구, 부안군, 완도군, 해남군, 밀양시	8
복합청사 ⁸⁴⁾	부산광역시남구, 의정부시, 경기 지도2과	3
사용승인 ⁸⁵⁾	익산시	1
신설 ⁸⁶⁾	인천영종구, 인천검단구	2
계		14

※ 부천소사구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이전 완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전대상 청사 1개동당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가 각각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5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가 각각 1,500만원 및 8,100만원만 편성되어 관련 예산의 증액이 없다면 14개 동의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중 23.4%인 59개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건물 등을 유상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 중으로, 임차료 인상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83) 노후·협소한 청사를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차 중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신축하는 청사

84)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단독청사 신축 시 활용이 낮은 국유지에 대해 다수 기관의 합동청사와 민간 임대 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신축 청사

85) 타 부처 용도폐지 청사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받은 청사

86)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인천검단구, 명칭 변경 인천영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규 청사

□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 각각 자치구 및 행정구가 2개, 1개 늘어남에 따라 3개 동의 청사 임차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복합개발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신규 임차료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에 따른 비용을 5억 1,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다음으로, 청사 유지관리 필수경비 증액 등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2022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음.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단위: %)

		연도별 동향(전년비)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2021	2022	2023	2023.9.	2023.10.	2023.11.	2023.12.
소비자물가지수		2.5	5.1	3.6	3.7	3.8	3.3	3.2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1.4	3.6	3.4	3.1	3.1	2.9	2.8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1.8	4.1	4.0	3.7	3.5	3.5	3.1
생활물가지수		3.2	6.0	3.9	4.4	4.5	3.9	3.7
신선식품지수		6.2	5.4	6.8	7.6	13.3	13.7	14.5
품 목 성 질 별	농축수산물	8.7	3.8	3.1	4.4	8.0	7.2	7.7
	공업제품	2.3	6.9	2.6	3.4	3.6	2.5	2.1
	전기·가스·수도	-2.1	12.6	20.0	19.1	9.7	9.7	9.7
	서비스	2.0	3.7	3.3	2.8	2.9	2.8	2.8

※ 자료: 통계청

□ 반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편성금

액 및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동향 지수 상승률에 비해 편성금액은 오히려 2022년에 비해 삭감되어 과부족액이 발생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도 이·전용이 예상됨.

<연도별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금액(A)	2,574	2,711	2,573	1,226	2,064
집행금액(B)	2,721	2,375	3,497	3,510(예상)	3,510(예상)
과부족액(B-A)	△147	336	△924	△2,284	△1,44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예산 집행 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청사의 준공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체청사 211개동 중 28개동 및 144개동이 신축 및 보수 대상으로 분류되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청사 준공연도별 현황>

신축연도(경과연수)	중앙	시·도	구·시·군	계	비고
1984년 이전(40년 이상)	-	1	11	12	신축대상
1984년~1988년(40년)	-	-	6	6	
1989년~1993년(35년)	-	-	10	10	
1994년~1998년(30년)	1	1	15	17	보수대상
1999년~2003년(25년)	-	3	8	11	

2004년~2008년(20년)	-	2	59	61	
2009년~2013년(15년)	-	5	50	55	
2014년 이후(10년)	-	5	34	39	
계	1	17	193	2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청사 신축은 2004년부터 2013년에 집중적 (55%)으로 이루어져 각종 설비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편성금액 및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1년 예산액 8억 7,800만원보다 적은 5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청사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면 적	196,663m ²	200,541m ²	208,572m ²	218,552m ²	223,052m ²
예산액	878	1,019	1,022	1,023	516
m ² 당 단가	4,460원	5,080원	4,900원	4,680원	2,310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건물은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노후가 급격하게 발생 하고 보수비용이 대폭 증가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은 안정적 관리가 필수인 점을 감안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청사는 1996년에 준공되어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등이 미비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⁸⁷⁾ 「수도법」,⁸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⁸⁹⁾은 각각 헌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의무 부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부여,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 교체 및 화장실·장애인편의시설 및 절수설비 개선 등에 2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사유지를

8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8)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위한 관련 법 준수를 위해 적정한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청사 중 준공된지 20년 이상의 청사는 89개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이전까지 매년 노후 청사 4개동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1개동에 대한 예산액만 반영되었고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교체 예산액도 적절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개선 대상 위원회>

	위원회수(동수)	위 원 회 명
2025년	2(2)	익산시(사용승인 청사), 충청북도,
2026년	3(3)	안양시동안구·만안구, 서귀포시
2027년	4(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울산남구·울주군
2028년	4(2)	울산광역시·울산중구, 부산금정구·동래구
2029년	4(2)	대구중구,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사의 신축 예산은 준공 후 35년 이상, 안전기준 D등급 시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바, 준공 후 20년 이상 35년 미만의 청사는 청사 수명 연장을 위해 각종 설비와 자재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승강기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승강기 교체에 따른 예산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신축청사 이전경비, 청사유지관리 필수경비, 노후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신축이나 복합개발청사로 사업시행 중인 청사의 2025년 준공에 따른 이전경비,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신규 청사 임차료 및 이전료, 부산남구 복합개발청사로의 이전비 등 10억 9400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공공요금 인상 및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에 따른 정상적인 청사 운용이 불가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19억 5,800만원의 증액 및 중앙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노후화된 청사 개선을 위해 10억 8,7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경비, 신규 청사 임차료 및 이전료 등	1,094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1,958
	중앙위원회 등의 노후화된 청사 개선	1,087
계		4,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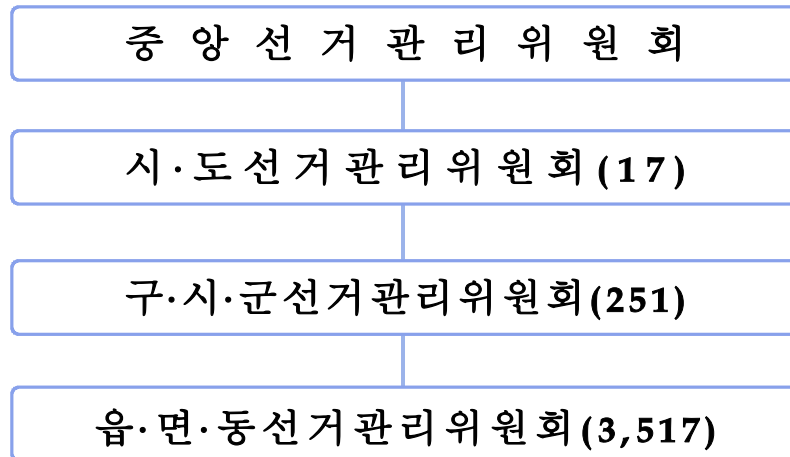
별첨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별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① 조직 구성(헌법상 독립기관)



소속기관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중앙, 시·도(17), 구·시·군(252)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중앙, 시·도(17)

② 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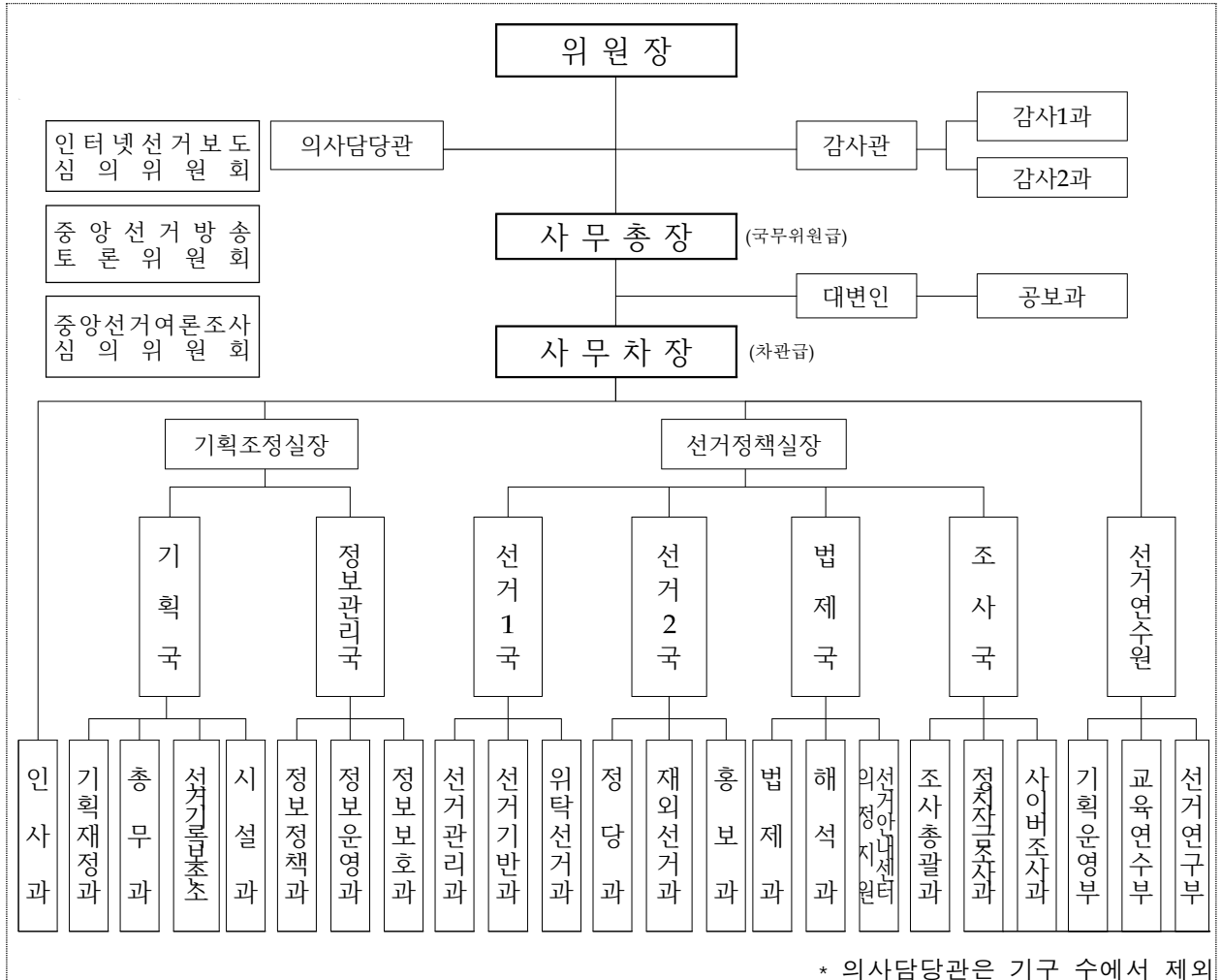
(2024. 9. 1. 현재)

구분 위원회별	정원	현원	결원	구 성
계	23,215	21,191	2,019	
중앙	9	9	-	대통령임명3, 국회선출3, 대법원장지명3
시·도	136	131	-	정당추천2, 지방법원장추천3, 자체선정3
구·시·군	1,992	1,987	5	정당추천2, 자체선정6
읍·면·동	21,078	19,064	2,014	정당추천2, 자체선정4

* 시·도 이하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에 따라 변동

3 사무처 기구

- 중앙위원회 ⇨ 3실·관, 8국·원, 26과



- 시·도위원회(17개) ⇨ 사무처[4과(경기도 5과, 세종특별자치시 3과)]
- 구·시·군위원회(251개) ⇨ 사무국 또는 사무과

4 공무원 정원

(2023. 9월 현재)

○ 중앙 :	372명(소속 기관 22명 포함)	}	총 2,982명
○ 시 · 도 :	640명(시 · 도별 22~54명)		
○ 구 · 시 · 군 :	1,970명(구 · 시 · 군별 5~13명)		